

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 
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

'06. 9. 20(수) 10:00-11:30

##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

2006. 9. 20

노동부

# 목 차

I. 추진배경 .....	1
II. 사회적기업의 특징 및 외국사례 .....	4
III.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 모델 및 분야 .....	9
IV.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방향 .....	10
V.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.....	18
VI.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.....	19

# I 추진배경

## 1. 사회서비스부문 고용확대의 필요성

- 경제 성장의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

< GDP 증가율 및 취업계수 추이 >

연 도	85~90	91~96	97~99	00~04
GDP 증가율(%)	9.2	7.7	2.2	5.4
취업계수	63.5	47.0	39.8	34.5

※ 취업계수 (명/10억원) = 취업자/GDP

- 급속한 고령화,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나

※ 2000년 고령화사회 → 2018년 고령사회 → 2026년 초고령사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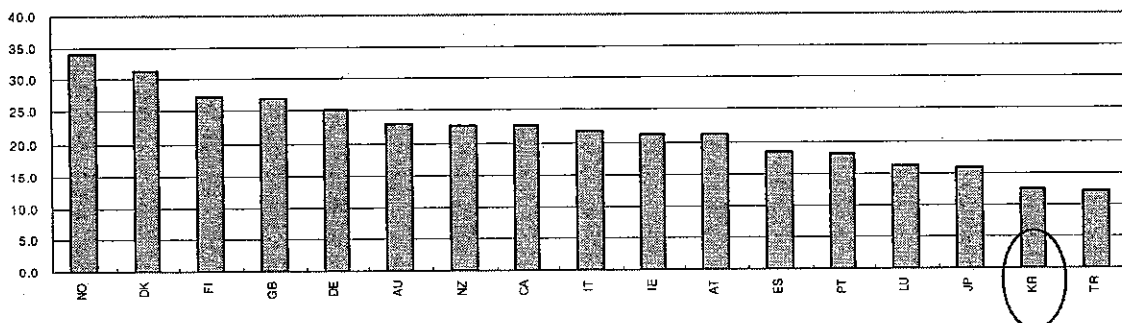
※ 노인가구중 노인부부가구는 26.6%, 노인 독인가구 24.6%로 자녀 동거가구 감소 추세('03년, 노인실태조사)

-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

※ 2003년 OECD국가의 평균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21.7%이나 우리는 '05년 13.1%(터키를 제외하고 최저 수준)

-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고용 창출 전략이 필요

< OECD 주요 국가 사회서비스 취업자 비중(2003년, ILO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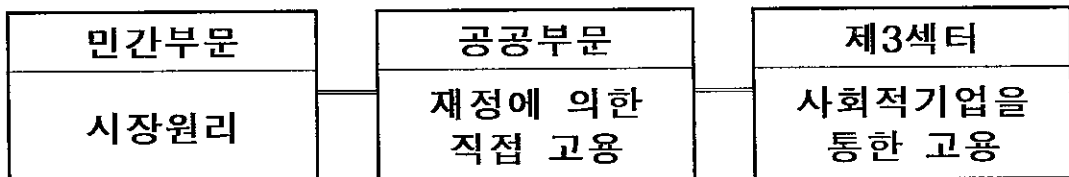
## 2. 사회서비스 부문의 특성

- 사회서비스 부문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공공행정·교육·복지·의료 등 사회적서비스를 의미(OECD, EU)
  - 이 부문은 개인·기업에 의해 수요·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·유통·개인 서비스 부문과는 달리 시장 실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이므로
  -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적정 개입(제도개선, 자원투자) 필요

### < 사회서비스 부문의 특성 >

- ◆ 사회서비스는 OECD국가들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 보유
  - ▲ 非市場性 (Non-market character)
  - ▲ 집단적 소비 결정(Collective consumption decision)
  - ▲ 재정에 대한 자원 조달(Public funding)

-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은
  - ① 민간부문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창출되거나
  - ② 공공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들어지고
  - ③ 민간과 공공의 자원이 결합된 제3섹터에서 사회적기업 형식으로도 창출



- 민간부문에서는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
  - 공공부문의 경우는 공공부문의 경직성과 비효율성, 재정 규모 확대의 한계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어려움
- 따라서 제3섹터에서 사회적기업의 형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추세 대두
  - ※ OECD 국가의 민간대비 제3섹터 고용 규모(Based on data compiled by CIRIEC, 1999) : 네덜란드(14.7%), 아일랜드(12.6%), 독일(12.6%), 덴마크(12.6%), 영국(7.3%), 스페인(7.4%), 프랑스(5.9%)

## 2. 그간의 정부의 노력과 한계

- 정부는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NGO와 협력하여 「사회적 일자리」 사업을 시작하고, 사회적기업 육성도 추진
  - 2006년에는 8개 부처가 참여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,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도 확충하는 성과
    -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단기적, 임시적이며 저임금 일자리로서의 한계
  - 따라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필요
-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
  - 소규모 사회적일자리 사업 → 광역형 모델 → 기업연계형 모델 → 사회적기업 모델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되
    -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바람직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을 유도

## 1. 사회적기업의 특징

## &lt; 사회적 기업 &gt;

◆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리·비영리 조직

## ① 조직의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, 사회서비스 제공 등 “사회적 목적” 추구

-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
- 이익분배가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영리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

## ②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

-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,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조직형태 구비
  - ※ 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·시설 등은 제외

## ③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구비

- 의사결정은 주주뿐만이 아니라 근로자, 서비스 수혜자, 지역사회 인사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민주적으로 결정

## ◆ 외국 사례

- 서유럽의 사회적기업 관련 법들은 대부분 사회적기업 구성원이 아닌 이해당사자들(stakeholders)을 위한 권리를 인정하고
- 민주적 운영 원칙(democracy principles)을 규정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을 통제할 가능성 제한
- 특히, 프랑스는 직·간접 수혜자나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규정 (OECD, 2004년 자료)

## 2. 외국 사례

### < 1 > 등장 배경

- 1970년대 이후 유럽(미국은 '80년대 이후)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정부·기업이 제공하지 못한 사회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면서 시작
  - 지역 단위에서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과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제도의 개혁, 복지 서비스의 민간 이양 추세에 따라 발전
- 최근에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늘어나고 있는 취약 계층의 고용창출과 사회통합, 일을 통한 복지(making work pay) 차원에서 관심이 더욱 증대

### < 2 > 유럽의 사회적기업

#### □ 의 의

- 90년대 이후 유럽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각국 경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나 다음의 특성 보유
  - ▲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적 활동
  - ▲ 높은 수준의 자율성 ▲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을 안고 활동
  - ▲ 일정수준 이상의 유급 노동 ▲ 지역사회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
  - ▲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등장 ▲ 제한적인 이윤 배분
  - ▲ 조직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의사결정 참여
  - ▲ 자본소유에 기반 하지 않은 의사결정권

◆ **영국의 사회적기업 개념**(『Social Enterprise : Strategy for success』)  
“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,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기업”

- 사회적기업이 “기업”이란 명칭을 써도 전통적 의미의 법적인 기업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
  - “생산적”이라는 활동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조직 포괄
  - 조합, 상호부조조직, 자발적 결사체, 영리기업도 포함

#### □ 사회적기업의 종류(활동 유형)

-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,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, 두 가지 활동의 통합적 수행도 가능
  - 다만, 이탈리아처럼 사회적기업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한 사례도 존재
    - ※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(1991)에서 “취약계층 고용 사회적 협동조합”과 “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협동조합”을 구분하고 두 가지 활동 병행 금지

### < 3 > 미국의 사회적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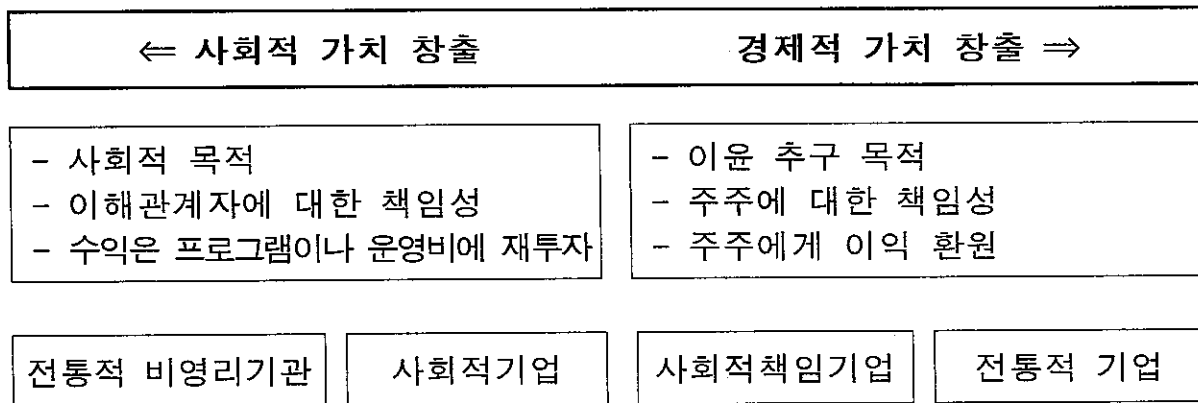
#### □ 의 의

- 사회적기업은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
  - “영리적 이윤 창출”과 “사회적 사명 수행”의 동시 추구
  - 재정적 수익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
    - ※ 사회적 목적 : 취약계층의 직업훈련, 일자리 창출,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,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
  - 영리적 수익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,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자원 창출의 수단

## □ 특 징

-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시장 지향적인 “기업”의 성격이 강하며 민간의 자원 활용(기업참여 등), 민간시장과의 경쟁 등이 특징
- 민간, 특히 비영리기관이 주도하면서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

### < 비영리기관 · 기업의 스펙트럼 >



※ 사회적책임기업 : 주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나 사회적 사명도 추구, 이윤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

- 『지역사회재투자법(Community Reinvestment Act)』을 통해 기업과 금융 기관이 사회적기업을 적극 후원

※ 장애인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, 취약계층 고용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

- 비영리 재단인 로버츠재단(REDF)과 60개가 넘는 대학 등이 사회적기업을 측면에서 지원

## < 4 > 입법례

### □ 국가가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

- ▲ 영국 : 공동체이익회사법('05.7월)
  - 정부조달 우선구매,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통한 경영자문 및 진단 서비스 제공
- ▲ 프랑스 : 노동시장 통합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('89.3월), 공동체 이익사회조합법('01.7월)
  -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험 및 가족수당에 대한 기여금 면제, 지역기금 조성
- ▲ 이탈리아 :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법('91년), 사회적기업법안('03년 상원에 제출되어 계류 중)
  - 목적수행을 위한 부동산매입시 등록세 및 저당세 감면, 법정 사회보험료 감면, 각 주의 조례 제정 등

## < 5 > 시사점

### □ 유럽과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

-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기보다 제3섹터인 사회적기업을 활용
-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
- 국가도 복지재정 절감 차원에서 기존 복지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시작
- 자생적으로 등장했지만 국가의 법적·제도적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성장

### III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 모델 및 분야

#### 1. 전환 가능 모델

- 현재까지 추진해 온 다양한 「사회적일자리」 사업 중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형태는 자립지향형, 광역형, 기업연계형 모델임
  - ▲ 자립지향형 : 지역단위에서 소규모(50명 미만)로 수행되는 사업 (296개, 3,306명)
  - ▲ 광역형 : 2개 이상 시·도에 걸친 대규모(50인 이상) 사업(9개, 580명)
  - ▲ 기업연계형 : NGO의 활동에 기업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가 결합된 대규모 사업(7개, 705명)

#### 2. 성장 가능한 분야

사업분야(예)	사업 내용 (예)
저소득층 가사·간병	· 독거노인,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사·간병서비스 제공
장애아 가족 지원 및 통합 교육	· 장애아 통학 차량 운행, 장애아동 방과후 지도 등
산모도우미	· 저소득 출산모의 산후 지원을 위해 도우미 파견
결식 이웃에 대한 급식	· 결식 아동, 노인에게 급식 지원, 향후 학교 급식사업으로 성장도 가능
재활용 판매	· 컴퓨터 및 백색가전 제품 재활용 판매
장애인 재활사업장	· 장애인 재활을 위주로 한 표준사업장 형태

#### 3. 사업 분야 · 대상의 추가 발굴

- 지방에서도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분야나 대상을 발굴

## IV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방향

### I 제도적 인프라 구축

#### 1-1. 사회적기업지원법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

- 사회적기업의 법적 토대 및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
  - ▲ 사회적기업지원법안의 주요 지원 내용
    -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, 보호된 시장 제공, 경영 및 연구지원,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, 사회적기업 후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
- 국회(환노위)에 계류중인 사회적기업지원법안의 조속 통과에 노력하고,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위법령 제정 추진
  - ※ 국회 계류중인 사회적기업 관련 법안
    - 『사회적기업지원법』(우원식 의원, '06.3.23) : 정부·여당
    - 『사회적기업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』(진영 의원, '05.12.9) : 한나라당

#### 1-2.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

-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일반기업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,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게만 다양한 지원 제공
  - ▲ 인증요건 : 사회적 목적 추구, 이해관계자 참여의 의사결정 구조, 유급 근로자 고용 등
  - 인증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인증하되, 1차적으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인증 대상 추천
    - ▲ 인증위원회(노동부) : 관계 부처, 기업, 비영리단체,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

### 1-3. 세제 지원

-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추진
  - 법인세 감면,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준비금의 손금 산입 등
-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기업에게는 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사회공헌 활동 유도

## ② 사회적기업의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재정 지원

### 2-1.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

- 사회적기업이 자립가능 할 때까지 일정기간 참여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
  - ※ 공모 등을 통해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·지원
  -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수준 상향 조정 추진
    - ※ 2007년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월 77만원('06년 월 70만원)
  - 사회적기업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 (참여자 수)로 운영비 및 관리인력 인건비를 지급 추진
- 사회적기업에 대해 최소 3년간 지원을 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창출
-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취업 알선

### 2-2.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

-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파이낸싱으로서 무담보 장기저리,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투자기관 확대
  - ※ 지역사회투자기관 : 사회연대은행, 실업극복국민재단 등

-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투자자 (Social Investor)를 발굴하고, 사회책임 투자 펀드 조성 등을 유도
  - ▲ 영국의 공동체 기업투자 펀드 :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공동체 기업(사회적기업)에게 대출 제공
  - ▲ 미국의 공동체 개발금융기관(CDFIs) 펀드 : 공동체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와 대출 제공
- 사회적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Awareness Campaign 지원,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  - ※ 미국의 지역사회(공동체) 재투자법(Community Reinvestment Act) :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나 교육,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### 3] 사회적기업에 보호된 시장을 제공

#### 3-1.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

-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서비스 및 생산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
  -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함
  -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

#### 3-2. 사회서비스의 수요 조사

-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영업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수요 파악 지원
  -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와 대상을 발굴

### 3-3. 사회서비스 수요 유발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용 지원

- 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를 제고

※ 아이돌보미 바우처,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5개 분야 1,705억원('07년)

-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용토록 적극 추진

※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(239억원) 등

## 4]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

### 4-1.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확대 실시

-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기업연계형과 광역형 「사회적일자리」 사업에 대해 기획, 홍보·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(8월~12월)

- 향후 설립되는 모든 사회적기업에게 경영컨설팅을 확대 실시

▲ 전문 경영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한국의료생협연대(간병), YMCA연맹(시간제 보육) 등 14개 기관에 대해 사업계획, 수익 창출 방안 등 경영전반에 걸친 컨설팅 실시 중

▲ 영국의 재활용전문 사회적기업인 옥스팜(Oxfarm)은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인 Mckinse & Company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아 경영위기 탈출

## 4-2.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설치

- 법 제정 후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경영컨설팅 및 사회적기업 연구·홍보 지원
  - 성장단계(창업 전·후)에 따른 지원서비스 제공
  -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 기술 경영자문단 연계, 공동 마케팅, 교육훈련 커리큘럼 개발 등 지원
- 경총 등 경영자 단체와 협의, 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『사회적기업 연계지원센터』 설치
  - 기업의 경영 노하우 이전을 지원

## 4-3. 민간기업 등을 통한 경영습득 지원

- 퇴직한 민간기업 CEO를 사회적기업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
  - ※ 고용보험제도의 전문인력채용지원금 활용
  - 『1社 1사회적기업』 연계를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경영 노하우가 사회적기업에 전수될 수 있도록 유도

## 4-4. 사회적기업간 Network 구축

- 사회적기업의 초기에는 정보 및 경영 노하우, 인지도 부족으로 브랜드 가치 형성과 영업 활동에 어려움 예상
  - 동종 업종내 영세 사회적기업간 “e-가상기업 협업화” 추진
    - 온라인상의 가상기업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관리와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
    - 시군구 단위에서는 개별단체의 기존브랜드 사용을 병행

- 동종의 사회적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광역사업 추진
  -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 매뉴얼 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견인

## 5 인력양성 체계구축

### 5-1. 사회적기업가 양성

-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명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사회적 기업가 양성이 중요
  - MBA 등 석사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에 사회적기업가 과정 설치를 지원
  - 사회적기업 CEO의 대학 최고경영자 수강지원 검토
    - ▲ 영국의 사회적기업가 학교 : 비학위과정이며 행동과 실천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
    - ▲ 미국 : 60개 이상의 대학교 등에서 『비영리 경영교육 운동 (Non-Profit Management Education Movement)』과 『사회적기업 리더십운동(Social Enterprise Leadership Movement)』 프로그램을 제공

### 5-2. 사회적기업 실무자 등 교육·훈련 체계 구축

-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무자의 경영 교육 훈련 및 양성과정 설치
  - 정기적인 경영 기법 워크샵 실시 및 교육훈련과정 신설
- 폴리텍 대학,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전문직업훈련기관 및 산업인력관리공단 실직자 재교육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
  - 참여자의 직능 교육 및 근로 적응 훈련을 강화하고,
  -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업자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업자훈련사업을 통해 훈련 실시

## **Ⅵ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**

### **6-1. 성공 사례 보급·전파**

- 초기에 성공사례를 발굴·홍보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·사회의 인식 제고
- 올해의 사회적기업 및 후원기업 포상 등 성공사례 발굴 및 시상
- 사례집 발간 및 발표회를 실시하여 수범 사례 확산·지원

### **6-2.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**

-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NGO, 기업, 지자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실시
- 고용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담당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지원
- 고용지원센터는 사전에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파악하여 관내의 공공기관의 조달계약의 담당자에게 홍보 및 우선 구매 권고

### **6-3. 사회적기업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DB구축**

- 사회적기업의 영향력과 부가가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
- 사회적기업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자료를 DB화

## ㉞ 「사회적일자리」사업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지원

### 7-1. 「사회적일자리」프로그램의 수익창출 기능 강화

- 기존 「사회적일자리」사업의 수익창출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연착륙 유도
  -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재정 지원만으로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공익형 사업은 지양하고
  - 기업연계형, 광역형 사업을 집중 육성
-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조속 정착 지원
  - 표준 정관, 사회적기업 인증기준·절차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 서비스 및 창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창업 지원

### 7-2. 시설비 등 지원

- 비영리기관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때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
  -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, 시설비 등 초기 자금을 융자지원하거나 국공유지 우선 임대

## V

#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

- ◆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움
- ◆ 국가, 지자체, 민간기업, NGO, 사회적기업지원센터, 사회적기업 등 각 부문의 체계적 역할 분담과 노력이 필요

## 1. 국가

-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 실시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**사회적기업의 토대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**
  - 법령 제정, 재정 지원 강화, 지속적 평가 모니터링 실시 등

## 2. 지방자치단체

- **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실시**
  -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 제정, 공공계약을 사회적기업에 발주, 공유지 임대 등 시설 투자 지원

## 3. 민간 기업

- 지역 사회 공헌 및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**사회적기업 적극 후원**
  - 사회적기업에의 기부 또는 경영기법 전수, 판로 제공 및 공동 벤처 육성

## 4. 사회적기업

- 일정기간 후 국가로부터 **재정 자립을 목표로 재원 다각화 노력**
  - 수익 창출 강화 및 재원의 다양화(서비스 수혜자, 후원 기관, 지방정부 등) 노력,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

## 5. 민간 지원기관

- 사회적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확대와 우호적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**언론 캠페인 전개**, 업종별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 다양화를 위해 **정부와 협력하며 역할 확대**
  - 지방 소재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 발굴 및 연계 기능 강화

## 1. 추진 일정

- 금년내에 사회적기업지원법을 제정하고,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준비
-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「사회적일자리」 사업을 선정하여 기업설립 준비를 지원
- 2007년 상반기부터 사회적기업 인증, 경영능력 배양 등 추진

## 2. 관계기관 협조사항

### 재경부

-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(세법 개정)
- 정부 조달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구매 요건 완화

### 지자체 등 공공기관

-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 개발 및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
-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
- 사회적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(예 : 공공기관 청소, 도시락 급식 등)